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. 11. 7 선고 2018가단198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농업회사법인 A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1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2. 9. 25. 접수 제15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12. 9. 1.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피고는 2012. 9. 1.경 C종친회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,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다. 원고는 2018. 7. 30.경 C종친회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아 등기를 마쳤고, 이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항성욱

별지